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5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6조)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등 건강안전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안 제12조)

건강안전관리규정에는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 관리규정의 작성·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3조)

건강안전협의회는 교육부·법무부 등 11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등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통보(안 제14조)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안 제15조)

국가기관의 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

사. 추진실적 등의 평가(안 제16조)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결과의 공개,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강검진·심리검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특화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해당 공무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

와의 면담 등을 거쳐 업무 재배치, 근무시간 및 장소의 조정, 병가 및 질병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안 제21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 및 긴급직무휴지 승인에 관한 내용을 정함.

차. 긴급직무휴지의 사후관리(안 제22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긴급직무휴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재배치 등 인사상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로 한정한다)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
3.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관의 장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요인”이란 공무원에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인을 포함

한다.

가. 소음, 진동, 고온·저온, 기계·설비 등 물리적 요인

나. 유해화학물질, 가스, 분진 등 화학적 요인

다. 바이러스, 세균 등 생물학적 요인

라.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인간공학적 요인

마. 직무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요인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란 근무환경 및 업무의 내용·방법·형태 등 공무수행과정 전반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공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무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재해예방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재해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5조(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안전책임관(이하 “건강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이하 “건강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이 장에서 “공무상 재해 통계”라 한다)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또는 심리검사 지원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건강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에 준하는 사람을 건강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 및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각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4급 이상(시·군 및 자치구의 소속기관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안전담당관(이하 “건강안전담당관”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건강안전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에 준하는 사람

을 건강안전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3급·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도 및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 및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각 소속기관의 규모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건강안전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5급 이상(시·군 및 자치구의 소속기관의 경우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건강관리의의 업무와 자격 등) ① 법 제4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건강관리의의(이하 “건강관리의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업무 재배치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지도·조언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의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도·조언
3. 공무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4.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건강관리의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강관리원은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건강지도관의 업무와 자격) ① 법 제4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건강지도관(이하 “건강지도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근무환경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원의 직무(건강지도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건강지도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공무상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공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8.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의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도·조언

9. 재해예방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1.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건강지도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지도
관과 협력해야 한다.

③ 건강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사람

4. 산업보건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제9조(안전지도관의 업무와 자격) ① 법 제4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안
전지도관(이하 “안전지도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건강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요인의 진단 및 조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근무환경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공무상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공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6. 재해예방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그 밖에 공무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② 안전지도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강지도관과 협력해야 한다.

③ 안전지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제10조(건강지도관·안전지도관의 업무 위탁)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건강지도관 또는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지도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2. 안전지도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지도관 또는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수탁한 기관

은 제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기관 소속 공무원의 건강·안전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에 따라 건강지도관 또는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탁한 기관을 건강지도관 또는 안전지도관으로 본다.

제11조(건강관리의등의 지도·조언) 건강안전책임관 및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관리의·건강지도관 및 안전지도관(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46조의2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된 규정이 법 제46조의2제5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13조(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과 회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
2. 인사혁신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교육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보건복지부
9. 고용노동부
10. 경찰청
11. 소방청

② 인사혁신처장은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전문가 등에게 협의회 참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기관·법인·단체·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3.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협력 및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항

제3장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14조(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통보)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 46조의4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기관의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시·군·구청장은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의 장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계획에 법 제46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계획 및 해당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제출로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추진실적 등의 평가)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6조의4제5항에 따

라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그 평가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7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조직과 예산 확보 현황
2. 국가기관등의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실시 현황
3. 국가기관등의 법 제46조의6에 따른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의 관리·

지원, 그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4. 국가기관등의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실시 현황

5. 그 밖에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무상 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법 제4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 재해 통계”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 공무상 재해 통계는 1년 단위로 작성·관리하며, 통계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공무상 재해 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자 수·재해율·사망만인율 등의 일반현황

2. 직종·재직기간·성·연령 등 재해자 특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유형·발생상황 등 재해 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무상 재해 현황의 파악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상 재해 현황을 그 연금취급기관이 속한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등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 통계간행물 발행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제4장 공무원 건강안전의 관리 및 지원

제19조(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민원응대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거나 건강장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라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이하 “직무특화검진”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직무특화검진 결과 대상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문의 진료 지원
2. 업무 재배치
3. 근무시간 단축 또는 조정
4. 근무장소 변경
5. 병가 또는 질병휴직 권고
6.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해당 공무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구성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심리검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법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 결과 대상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의 진료 지원
2. 업무 재배치
3. 근무시간 단축 또는 조정

4. 근무장소 변경

5. 병가 또는 질병휴직 권고

6. 심리상담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해당 공무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및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구성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건강안전책임관 또는 부서장은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대상 공무원이 신고자 본인인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급한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하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라 한다) 결과지

2. 신고 대상 공무원이 신고자가 아닌 경우 : 신고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작성한 자살 위험징후 확인표(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이 즉시 직무수행을 멈춘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진료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이하 “긴급직무휴지”라 한다) 하여야 한다.

1. 신고 대상 공무원이 신고자 본인인 때 : 신고 대상 공무원이 마음건강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경우

2. 신고 대상 공무원이 신고자가 아닌 때 : 신고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대상 공무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희망할 경우

④ 소속 공무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긴급직무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은 복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를 승인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 안 된다.

제22조(긴급직무휴지의 사후관리) 건강안전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긴급직무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해당 공무원 소속 부서의 구성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 재배치

2. 근무시간 단축 또는 조정

3. 근무장소 변경
4. 병가 또는 질병휴직 권고
5. 건강증진 또는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해당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

제23조(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금지) 국가기관의 장등은 직무특화검진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결과 또는 긴급직무휴지를 이유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2.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3.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4.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그 밖에 대상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24조(재해예방 교육)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건강안전책임관·건강안전담당관 및 건강관리의를등(이하 “건강안전책임관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등으로 지정되거나 배치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직무 관련 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정되거나 배치된 날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직무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관리의로 위촉된 사람이나 건강지도관 및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25조(공무원 재해예방 통합시스템)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예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관련 정보의 연계·공유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재해예방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강진단 및 상담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공무원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의 종합적 작성·관리

② 국가기관의 장등 및 연금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원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2.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 여부 관리
3.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직무특화검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
4. 법 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

제2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영에 따라 재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 건강안전 컨설팅
4.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해예방 문화확산 및 인식 개선 활동
6. 그 밖에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 인사혁신처장은 2028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 국가기관의 장등은 2028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1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을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78